

2025/26

도선수습생 법규

엠북 해사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5시간 완성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도서명 : 도선수습생 법규

ISBN : 979-11-7393-076-8

발간일 : 2025-09-09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6,000원



도선수습생 법규

[목차]

제1편 도선법(p3)

제2편 선박입출항법(p20)

제3편 해상교통안전법(p50)

제4편 해양환경관리법(p125)

제5편 해양환경보전법(p202)

[부록]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p212~242)

(참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의 관계

-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반규정과 제5장 선박의 항법 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수용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도선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도선사면허 등(p5)

제3장 도선 및 도선구(p11)

제4장 보칙(p17)

제5장 벌칙(p18)

[용어]

톤은 선박 총톤수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면허는 도선사면허

면허증은 (도선사)면허증

수습생은 도선수습생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 안전 도모
-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2. 정의

가. 도선

-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

나. 도선사

-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 할 수 있는 면허 받은 자

다. 수습생

- 수습생 전형시험 합격 후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 실무수습 받고 있는 자

3. 적용 범위

-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 직무 대행자에 적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도선사면허 등

4~16조

1. 면허

가. 도선사가 되려면 장관의 면허 받아야 함

나. 장관은 1~4급 도선사로 등급으로 구분해 도선구별로 면허 함

다. 면허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종류

: 총톤수가 다음 이하

1) 1급 경력 1년

- 이상은 모든 선박

- 미만은 12만톤(위험화물운반선은 10만톤)

2) 2급은 7만톤(위험화물운반선은 6만톤)

3) 3급은 5만톤(위험화물운반선은 4만톤)

4) 4급은 3만톤(위험화물운반선은 2만톤)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제외

라. 면허 받으려면 면허 요건과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장관에 면허 신청

- 면허 등급 변경시도 같다

마. 장관은 면허 하면 면허 원부에 등록하고 면허증 발급

바. 도선사는 면허증이 분실,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시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 개서받음

2. 면허의 요건 등

가. 장관은 다음 모두 갖춘 자로서 면허 등급별로 경력 기준에 적합한 자에 면허

1) 6천톤 이상 선박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

- 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내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포함

2)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 하려는 도선구에서 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

3) 도선사 시험 합격

4) 신체검사 합격

나. 도선사 경력 기준

- 1급은 2급, 2급은 3급, 3급은 4급으로,
- 1년 이상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

3.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 도선사는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 대여못함
- 누구든지 도선사 자격 취득않고 명의 사용, 면허증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 못함

4. 결격사유

: 다음은 도선사 못됨

가) 한국 국민 아닌 자

나)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다)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 집행 종료(의제), 면제 2년 미경과

라) 해기사면허 취소된 자, 선장 직무 수행 관련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미경과

마) 면허 취소 2년 미경과

- 한국 국민 아닌 자,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가) 유효기간

- 면허증 발급 또는 면허 갱신 받은 날부터 5년

- 면허증 발급받은 날은

· 도선사가 면허 등급 변경 신청해 면허 받은 경우 처음 면허증 발급받은 날

· 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은 날

나) 면허 받은 자가 유효기간 후에도 면허 효력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 갱신

다) 면허 갱신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 면허 효력
정지

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효력을 회복하려면 면허 갱신 받아야 함

마) 면허 갱신 받으려면 장관 실시 교육 받아야 함

바) 다음 사람은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 면허 갱신 신청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선업무안함
-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업무정지나 견책 징계받음

6. 도선사의 정년

가. 65세까지 도선업무 가능

나. 다음 기준 충족 도선사는 도선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3년 범위내 정년 연장
가능

1)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3년 이상

-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로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
포함

2) 교육훈련 이수

- 도선사 승하선 안전, 체력/건강관리 교육훈련을 장관 지정/고시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
- 도선사 정년일 기준 최근 2년내 이수한 것에 한정

3) 신체적 능력

- 인증기관 실시 체력 인증 체력 항목 중 2/3 이상(근력 측정 항목 포함되어야 함)에서 2등급 이상
- 체력 인증은 도선사 정년일 기준 최근 6개월내 받은 것에 한정

다. 정년,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면 12월 31일이 정년

7. 신체검사

가) 도선사가 되려면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 요

나) 정기 신체검사

- 면허증 발급받은 날(면허 등급 변경을 신청해 면허 받거나 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 첫 면허증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지날 때마다 2년 되는 날 전후 3개월내 받음
- 정년이 연장된 경우 65세 된 날부터 1년 지날 때마다 1년 되는 날 전후 3개월내 받음

8. 장관의 면허 취소 등

가) 다음은 면허 취소해야 함

- 거짓/부정으로 면허 받음
-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 대여

- 결격사유

나) 다음은 면허 취소나 6개월내 업무 정지 가능

- 면허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 도선

- 정기 신체검사 받지 않음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

-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 요청 거절

- 차별 도선

- 도선 중 해양사고 낸

· 예외) 불가항력으로 사고

- 업무정지기간에 도선

- 술에 취해 도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도선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도선

다) 면허 취소시 청문 요

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 한 때 도선사에 통지

- 도선사는 30일내 장관에 면허증 반납

마) 해양사고 낸 경우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처분못함

- 사고가 중대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4개월내 업무 중지

바) 업무정지기간은 장관이 면허증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

9. 정보의 제공 등